

○○○씨 세보 편찬 요강(編纂要綱)

제 1 장 : 基本

1. 本譜의 編纂은 丙寅寶(一九八六年刊行)에 基準하고 癸丑譜(一八五三年刊行)를 第一의 參考譜로 한다. 但, 大同譜로서의 全體 均衡上 必要치 않다고 判斷될 때는 丙寅譜의 記載事項이라도 今譜에 轉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乙巳譜(一九〇五年刊行)에서 丙寅譜까지의 系代·官職·諱·名 등이 癸丑譜와 相異할 때는 癸丑譜를 따른다.
但, 諱·名에는 「舊譜 또는 前譜 某」라고 細書하며 系代의 相異는 註說을 적는다.
또 癸丑譜와 丙寅譜에 記載되었더라도 그것이 確實한 典故와 相異할 때는 典故에 따르며 典故不明 또는 未詳일 때는 丙寅譜대로 記載한다.
3. 癸丑譜 續·別編 및 丙寅譜 地·人編(七·八卷)의 官爵이나 事蹟도 典故가 確認된 것이 아니면 轉載하지 않는다.
4. 歷代譜에 記載되어 있지 않더라도 典故가 밝혀진 必要한 事項은 記載하되 그 典故事由를 括弧안에 밝힌다.
5. 廢譜(丁丑譜)·所謂嶺南譜 등)와 派譜는 原則적으로 典故 또는 參考로 採擇하지 않는다.

제 2 장 : 編纂方向

1. 날이 갈수록 族譜에 대한 關心이 稀薄해지는 時點에서 마지막일지 모르는 今譜刊行事業은 丙寅譜(一九八六年刊行)以後에 出生 또는 婚姻한 이들을 빠짐없이 收錄하여 後代에 證據가 되게 하고 丙寅譜에 漏落된 同族들의 救濟와 丙寅譜의 地篇(七卷)·八篇(八卷)에 入錄된 門中 또는 個人을 그 關聯門中の 異議提起가 없는 限 當該譜系에 還歸하기 위함이다. 但, 丙寅譜의 地篇(七卷)·八篇(八卷)에 收錄된 門中 中 收單을 提出하지 않은 門中 및 個人과 新入譜 希望者中 上·中系가 接續되지 않는 門中 또는 個人은 別錄에 收錄한다.
2. 先代의 行蹟·官爵 등은 丙寅譜에 記載된 대로 移記하고 後孫들이 教旨·實錄 등에서 發見한 새로운 證憑資料를 가지고 訂正을 要求하는 門中の 適否處理와 新規入譜處理는 請願處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訂正 또는 入譜할 수 있다.

제 3 장 : 體制 및 編制

1. 四·六倍版 洋裝 金箔題字 體制에 縱六段 高十二字 四十四行의 全帙編制로 하고 五代를 한첩(疊)으로 하는 橫間譜로 編成하되 首編과 各編으로 分類한다.
2. 首編에는 始祖부터 九世祖까지의 世系圖를 비롯 墓所·齋閣·山圖와 歷代譜 序文 및 凡例(編纂要綱) 등을 收錄하고 世系圖下段에 孫錄의 卷面數字를 記載한다.
3. 一卷譜派之源 以下를 孫錄으로 하고 各派卷頭에 그 派의 小派系圖(十五世까지)를 添附하며 系圖下段에 當該卷面數字를 記載한다.
4. 이름 表記는 漢字 十六포인트 清朝體로 하고 漢字이름 아래 右便에 國文字 八포인트 清朝體로 音を 단다. 단, 造字등으로 音이 不確實한 것은 國文音を 달지 않는다. 또 傍

註의 國漢文도 八포인트 清朝體로 한다.

5. 傍註에서 國漢文 混用이 可能한 部分은 取擇하되 不可能한 純漢文의 單語와 語節은 解讀이 容易하도록 띄어 쓴다.

제 4 장 : 傍註表記

1. 年代表示는 西紀와 干支를 併記한다. 但, 高麗·朝鮮朝는 列朝年代를 쓰고 括弧안에 西紀年代를 쓴다.
2. 子女表示는 先男後女로 하되 이름위에 子字와 女字로 區分하고 養子는 系子로하며 그 生父를 記錄하여 所自出을 分明히 한다. 또 初·繼配의 所生子女數를 表示하지 않으나 初配의 無育·早夭등은 밝힐 수 있다.
3. 嫡·庶의 區分은 하지 않으며 初名 등은 『前名』으로 可及的 統一한다.
4. 出系者가 있을 때는 承統者를 父名밑에 쓰고 出系者는 다음에 쓰되 序次表示를 하여야 한다.
5. 舊譜의 序次는 그대로 두되 直後孫들의 完全合意로 序次(年齡順)訂正을 要求할 때는 이를 收容한다.
6. 生卒年月日
 - ① 死者의 境遇=生年과 卒年月日을 記載한다.
 - ② 生者의 境遇=生年月日을 記載한다.
7. 雅號
 - ① 舊譜 및 號譜 등 文獻에 실린 雅號는 轉載한다.
 - ② 顯達한 先祖로서 世間에서 通用되었거나 文集 또는 遺稿들에 나타난 號는 記載할 수 있다.
 - ③ 生存者의 雅號는 特別한 例를 除外하고는 收錄하지 않는다.
8. 墓(山所)

葬地는 墓로 統一하고 可及的 現行의 地名·俗名·山(谷·嶺峙)名·地蕃·坐向 등을 詳細히 記載하며 墓碣·石物 등의 設置를 記載한다.
9. 配位
 - ① 初配와 繼配는 區分없이 配로 表示하고 貫姓名을 쓴다.
 - ② 一般傍註는 乾位(男便)와 同一하며 四祖(祖·曾祖·高祖·外祖)의 記載는 省略하고 父의 諱名만을 쓴다.
10. 出嫁女와 未嫁女
 - ① 出嫁女는 이름과 生年月日(死者는 生年만)·學位·經歷 등을 쓰고 男便을 옆줄에 『夫』字와 姓名·本貫 등을 쓴다. 但, 本人의 이름을 쓰지 않을 때는 『女』字 밑에 夫의 姓名과 本貫을 쓴다.
 - ② 出嫁女가 離婚하고도 守節할 때는 前夫를 記錄하고 改嫁하였을 때는 後夫만을 記錄한다.
 - ③ 外孫은 男女 모두를 記錄하되 姓은 쓰지 않고 先男後女로 이름만 쓴다.
 - ④ 夫의 學位는 쓰지 않고 經歷은 特別한 경우에만 쓴다.
 - ⑤ 未嫁女는 이름·生年月日과 學位·經歷 등을 쓴다.

11. 學位

- ① 大卒 및 學士 以上
- ② 高試合格者 및 이에 準하는 各級考試合格者.

12. 經歷

① 官職

- ㄱ. 一般職 : 事務官 以上
- ㄴ. 軍警職 : 少領 · 警正 以上
- ㄷ. 教育職 : 初等校長級 以上
- ㄹ. 法曹職 : 判檢事以上 및 辯護士
- ㅁ. 選舉職 : 國會 · 廣域 · 基礎議員 및 廣域 · 基礎團體長

② 有功者

- ㄱ. 國家 : 獨立 · 戰時 · 其他爲國有功者(勳 · 褒賞者)
- ㄴ. 社會 : 社會 · 藝術部門 有功者(勳 · 褒賞者)
- ㄷ. 孝烈 : 市 · 道知事以上 褒賞者

③ 著名者

- ㄱ. 社會公認의 著名人士
- ㄴ. 上場 및 有數法人社의 經營主
- ㄷ. 上場法人社의 理事以上
- ㄹ. 公共機關의 上級幹部以上

④ 宗事關聯

- ㄱ. 大宗會會長團 및 市道宗會長
- ㄴ. 主要爲先 및 大同譜事業 主幹責任者以上

13. 傍註處理

- ① 考證되지 않는 官爵 · 孝烈 · 學行 등은 納單者가 證憑資料를 提出하지 않는 限 削除한다.
- ② 官爵은 最終 또는 最高位職만을 쓰고 重要한 歷過職中 한 · 둘을 記錄한다.
- ③ 特別한 境遇以外에는 作品(詩文 등) 또는 遺訓 · 實蹟 등을 記載하지 않는다. 但, 上代의 境遇는 遺集名이 없더라도 典攷만 있으면 記載할 수 있다.
- ④ 官職의 略語(略稱)는 可及의 正確히 쓴다.
- ⑤ 上下系의 年令이 不合理할 때는 『生』 『卒』을 削除한다.
- ⑥ 丙寅譜나 그 前譜에 記載되지 않은 官爵이라도 確實한 典攷가 있으면 追記할 수 있다.

제 5 장 : 譜系處理

- 1. 派系移動 · 世代換改 · 換父易祖 등은 絶對 認定하지 않는다. 但, 關聯門中의 確認과 證憑資料를 提示하였을 때는 處理할 수도 있다.
- 2. 繼后 · 繼子의 後孫罷繼는 認定하지 않는다.
- 3. 前譜에 无后 · 无攷로 處理된 門中 또는 個人에 새로운 下系가 생겼을 때는 證憑資料에 의해서 만이 處理할 수 있다.
- 4. 譜系의 故意的인 造作은 不容한다.
- 5. 繼子의 生派未詳은 乙巳譜까지의 것은 그대로 두고 癸卯譜以後의 것은 調査하여 處理한다.
- 6. 前譜의 无后 · 无攷에 系代 또는 實子入錄은 認定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但, 考證이 있을 때는 이에 구애되지 않는다.

7. 六代以上 系代入譜는 證憑資料에 依해 處理하고 五代以下 系代入譜는 特別한 하자가 없는 限 除・戶籍謄本에 依해 處理한다.
8. 世代之 基準은 生存 最高行者로 한다.
9. 丙寅譜까지 无攷・无下系이고 今譜 無單은 无攷處理한다.
10. 丙寅譜까지 無男只有女로 表記된 것은 无男으로 處理한다.
11. 丙寅譜까지 納單入譜되고 今譜에 納單치 않은 門中이나 個人은 丙寅譜대로 轉載하고 下段에 無單으로 表示한다.
12. 大同譜의 編纂事實을 알면서도 特殊事情으로 修單을 내지 않은 門中은 闕單處理한다.
13. 丙寅譜때 卷之八(人編) 末尾에 收錄한 癸丑譜(一八五三年)의 續・別編 系中 系代되어 있는 系는 그 譜系에 移錄하고 系代가 없는 系는 別錄處理한다.

제 6 장 : 侍郎派의 派名 및 世代調整

1. 丙寅譜까지 派名을 侍郎中派로 부르던 七世 諱○○公의 門中을 宗議에 依하여 侍郎派로 한다.
2. 綾城具氏의 十三世祖는 거의 朝鮮朝 宣祖代이셨는데 唯獨 侍郎派만이 高麗朝에서 文科에 壯元及第(高麗史)한 諱○○公을 十三世祖로 하고 있음은 不合理하므로 諱○公을 五代遡及하여 派祖 諱○○公의 長子로 하여 八世로 하였다.
3. 侍郎派 宗人中 一部가 六代 또는 七代遡及을 主張하고 있으나 이는 絶對 容認하지 않는다.

제 7 장 : 審査

1. 審査는 派系와 系代之 正統性을 밝히고 證憑・典攷 및 當該門中之 同意書 등을 確認한다.
2. 審査經緯를 밝힐 必要가 있을 때는 그 顛末을 收錄하여 永久保存한다.

제 8 장 : 別錄

1. 先系・先祖로 上中系 不接續의 族親을 綜合하여 別錄에 收錄한다.
2. 別錄에는 現在까지 알려진 事實과 本人의 眞實된 陳述등을 記錄하여 後日에 參考가 되도록 하고 以後 接續의 證憑資料가 確認되면 本譜에 入錄한다.

제 9 장 : 其他

1. 以上 編纂要綱(凡例)에 例示되지 않은 部分은 慣行에 따라 編纂委員會에서 審議決定하며 任意로 誇張敍述한 傍註는 一切不許한다.
2. 前譜의 記錄中 誤謬가 있을 境遇 證憑이 있더라도 關聯者에게 周知한 後에 修正한다.
3. 茅亭(諱恒)公의 忠壯이라는 諡號를 癸卯譜에 檢定없이 入錄한 것을 丙寅譜때에 考證이 없어 拔去하였으나 그 一部 後孫이 今譜에 入錄을 要求하면서 서울地方法院에 ○○○氏 大同譜發行停止假處分을 申請한 바 法院으로부터 棄却되었다. 앞으로 있을 大同譜 編纂 時에도 茅亭(諱○)公의 諡號入錄은 絶對 禁한다.

○○○씨 세보편찬위원회